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1) 장기요양기관 한아름전문요양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일부 감경대상자와 의료급여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

2) 요양등급별 급여종류, 내용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. 단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 <2025.01.01. 개정>

(2025.01.01. 기준)

요양등급	1일 수가	급여종류	급 여 내 용	비 고
1	90,450	시설급여	신체활동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, 기능평가 및 훈련, 치매관리 지원, 응급지원,시설환경 관리, 간호처치	
2	83,910			
3	79,240			
4	79,240			
5	79,240			

3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비급여 항목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식사재료비

②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

③ 이 · 미용비

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

4) 비급여 항목의 내용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. 단, 개인적인 이 · 미용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실비로 개별적 수납 또는 지급한다.

(2025.01.01. 기준)

비급여 항목	내 용	월 급여비용(30일)
식재료비 (일반식)	- 1일 3식 : 10,500원	- 315,500원
식재료비 (경관식)	1일 3식 : - 11,400원(화이바/1캔 1,900원) - 8,100원(RD/1캔 2,700)	- 204,600원 (화이바/마일드케어) - 186,000원
간식비	- 1일 2회 1,000원	- 30,000원

5) 기타 비용

①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
(단,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 통장에서 사용하도록 한다.)

②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(원예치료, 도자기 빚기, 외식, 야외 프로그램 등)에 소요되는 비용(단,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 통장에서 사용하도록 한다.)

③ 병원 입원 시 간병 비용

④ 병원 이용료 및 비급여 포함 사항(단,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 통장에서 사용토록 한다)

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입소자의 요청에 의한 생활용품 및 기타 개인 이용용품, 개인 기호도 음식 등을 지급할 경우 (단,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 통장에서 사용하도록 한다.)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

⑥ 특별식: 개별적으로 수가 산정 후 수납
(단, 보호자가 직접 부담의 경우는 제외, 시설 위탁의 경우만 수납)

⑦ 위 사항 외의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지침의 별첨에 따른다.

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· 의무

1) 신원 인수인의 권리

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
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
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
2) 신원 인수인의 의무

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
② 입소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,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
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(해외 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

④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한다.

⑤ 입소자·보호자는 본원 생활규칙(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)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. (2024.01.01. 개정)

5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.

1)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
2)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3)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
4)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해제 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.